

보도자료



보도	2024.8.27.(화) 15:00	배포	2024.8.27.(화)		
담당	보험사기대응단	책임자	실 장	정제용	(02-3145-8730)
부서		담당자	팀 장	현은하	(02-3145-8888)

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

〈 주요 내용 〉

- ♦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, 개정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 관련 세부 이행방안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음
- (특별법 이행방안) 경찰청방심위 등과 사전 협의한 실무기준 등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수사의뢰 및 심의요청하고,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
- (중점 추진과제) 건보공단·자배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브로커와 병·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, 고의 자동차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대응하고,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집중 지원하기로 협의
- ◆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보험업계 등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

I. 개 요

- □ '24.8.27.(화) 금융감독원은 **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**로 **보험사기 대웅조직**(SIU) **담당 임원 간담회**를 개최
 - 이번 간담회에서는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(이하 '특별법') 개정 취지에 맞게
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용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였고,
- 보험사기 조사·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음

[보험업계 SIU 담당 임원 간담회 개요]

- (일시 · 장소) '24.8.27.(화) 15:00~18:00,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
- (참석자)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, 보험사기대응단 실·팀장 생-손보협회 및 36개 보험회사 SIU 담당 임원·부서장

- 1 -

3. '24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

- □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대용을 위해 하반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발표하고,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
- **브로커와 병·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** 및 **자동차 고의사고**에 대해 건보공단, 자배원 등에 대한 **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자화**하고
- 특히,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지원하기로 협의하였음
- 또한,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「보험업법」 개정을 적극 추진·지원하고,
 -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음

Ⅲ.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□ 금번 간담회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, 공동 대용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였으며,
-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
 특별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- □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민생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용해 나가겠음

Ⅱ. 주요 논의내용

◇ ⁰개정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, ^②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을 집중 논의

1.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발언 요지

- □ 금융감독원 **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**는 **모두발언**을 통해
-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
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,
- 법개정 취지에 맞게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하여 보험사기(알선·광고 등 포함)에 적극 대용하는 한편,
-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,
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음

[특별법 주요 개정내용]

- 보험사기의 알선·유인·광고 등 행위 금지·처벌 및 심의·시정요구 요청권
- ❷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
- ❸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등

2. 개정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

- □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융감독원이 **경찰청·방심위** 등과 **긴밀히 협의**하여 **마련한 실무기준** 등을 보험업계에 **안내**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
 - * 보험사기 알선 등 수사의뢰 기준(경찰청 협의), 광고심의 요청시스템 구축(방심위 협의)
-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 의뢰하고,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하였으며,
-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,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음
- 아울러,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·유인·권유·광고하는
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음

- 2 -

- 3 -